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15대 회장 선거 공고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15대 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 일정

- 가. 추천서 및 구비서류 교부: 2019. 10. 1.(화) 10:00 ~ 10. 2.(수) 15:00
- 나. 후보자 등록: 2019. 10. 10.(목) 10:00 ~ 10. 11.(금) 15:00(우편등록 불가)
- 다.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2019. 10. 18.(금) 10:00 ~ 10. 23.(수) 15:00
- 라. 후보자 확정 공고: 2019. 10. 25.(금)
- 마. 투표안내문·투표용지·후보자 공보물 발송: 2019. 11. 21.(목)
- 바. 우편투표 실시: 2019. 11. 26.(화) ~ 12. 2.(월) 18:00 대구교총 도착에 한함.
- 사. 개표: 2019. 12. 2.(월) 18:00
- 아. 당선자 발표: 2019. 12. 2.(월) 22:00경

2. 선거 방법 : 전 회원 우편투표

3. 후보자 추천서 교부

- 가. 교부 기간: 2019. 10. 1.(화) 10:00 ~ 10. 2.(수) 15:00
- 나. 교부처: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
 ➔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70 대구교총 내 ☎ 053)655-2680
- 다. 교부 부수: 300매
- 라. 교부 안내
 - 1) 추천서 수령 시, 입후보 예정자는 ‘추천서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나) 서식)’와 ‘추천서 수령증(별지 제5호(다)서식)’에 날인한다.(신분증과 도장 지참)

- 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입후보 예정자의 도장을 지참하고 위임장(별지 제5호(라)서식)을 제출한다.(단, 대구교총 임원은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3) 추천서와 입후보 등록서류를 함께 교부하며, 추천서는 재교부 불가.
(단, 4. 라. 4)에 한해서만 재교부 가능)

4.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정관 제6장 제21조(회장·부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선거 공고일 현재 계속 5년 이상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정년이 남아 있는 회원으로서 재적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전 회원이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정관시행규칙 제4장 제21조 ① 회장은 회원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전 회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무기명 비밀투표방식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1인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 회원 수는 2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회장은 투표결과 다득점자로 결정한다.(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자가 당선된다.)

④ 회장은 대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의 학교 급별 윤번제로 선출한다.

⑤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기탁금 200만 원을 납부한다.

⑥ 그 외 회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규정(회장선출규칙)에 따른다.

정관시행규칙 제4장 제26조 회장 및 한국교총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 60일 전까지(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1. 한국교총 임원, 대의원 및 직능조직의 회장과 부회장
2. 본회 임원, 대의원, 분회장
3. 본회 직능조직의 회장과 부회장 및 지역 직능조직의 회장과 부회장
4. 본회 산하단체의 회장과 부회장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관시행규칙 제4장 제21조 ④ 「회장은 대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의 학교 급별 윤번제로 선출한다.」의 규정에 따라 제15대 회장 입후보 자격은 **초등학교 회원**이어야 한다.

가. 등록 일시: 2019. 10. 10.(목) 10:00 ~ 10. 11.(금) 15:00(우편등록 불가)

나. 등록처: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

→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70 대구교총 내 ☎ 053)655-2680

다. 등록 시 구비서류

1) 추천서 (별지 제5호(가) 서식)

• 추천서는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원본직인 날인에 한해 유효함.

2) 위임장 (별지 제5호(라) 서식): 대리 등록 시에 한함.

3) 이력서 (별지 제6호(가) 서식)

4) 추천회원 명단 (별지 제6호(나) 서식)

• 정관 제6장 제21조 1항 및 정관시행규칙 제4장 제21조 2항에 따라 이 회의 회원으로서 재적 회원 200명 이상 25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회원의 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선·후 구분 없이 모두 무효로 처리함.

• 추천회원명단은 1부 출력하여 Excel파일과 함께 제출함.

5) 서약서 (별지 제6호(다) 서식)

6) 후보자 인영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7) 투표용지 발송 및 접수 참관인 신고서 각 2명 (별지 제14호 서식)

8) 개표 참관인 신고서 2명 (별지 제19호 서식)

9) 컬러사진(3cm×4cm) 1매

10) 자기소개서과 후보추천이유서

• 자기소개서: 후보의 성명, 소속, 직위, 공약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2매(12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후보추천이유서: 추천회원 1명이 추천이유서를 작성하되, A4용지 1매(12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기소개서과 후보추천이유서에 허위 사실과 타 후보 비방 내용을 기재할 수 없음.

• 자기소개서 및 후보추천이유서는 1부 출력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함.

• 등록서류 보정 필요시, 제출 서류 일체를 반송함.

라. 후보자 등록 미비서류 보정 접수

1) 기간: 2019. 10. 14.(월) 10:00까지

2) 장소: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

→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70 대구교총 내 ☎ 053)655-2680

3) 대상: 1차 등록 접수 시, 회원의 추천인 중복 등으로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추천서 재교부: 추가 등록 대상자 중 중복 추천으로 인해 무효 처리된 경우,

추천인수 부족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추천서를 교부함.

마. 기호추첨: 2019. 10. 16.(수) 16:00 예정(후보예정자에 개별 통보)

바. 후보자 확정 공고: 2019. 10. 25.(금)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 및 공문

사. 선거운동 기간: 2019. 10. 1.(화) 10:00 ~ 11. 25.(월) 24:00

5. 기탁금

가. 기탁금 이백만 원(W2,000,000원)을 후보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함.

→ **농협 725-01-171163(예금주 대구교총)**

나. 기탁금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득표 시에는 후보자에게 반환함.

6.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회장 선출 규칙 제6장 제20조 ~ 제26조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운동’ 이라 함은 후보 등록을 위한 준비 행위,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는 행위, 기타 후보자의 홍보행위를 말한다.

제21조(선거운동 기간 및 사전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은 추천서교부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고, 이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선거운동의 금지제한 등) 이 회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분과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개인별 홍보물의 제작·배포
2.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3.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당선 후 조직관계 직위 등)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직능조직, 산하단체 기타 조직 행사나 회의 장소에 후보자의 방문은 일체 금지한다. 다만, 후보자가 교총의 임원, 산하단체장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5. 후보자 및 그 지지자 또는 익명의 사람이 대구교총 및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삭제 원칙으로 함.

6. 대구교총 및 한국교총의 임원 또는 사무국 직원 등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7. 선거분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23조(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처리) ① 선거분과위원은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제21조에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시에는 선거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분과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지지자인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개경고
 2. 등록무효
 3. 당선무효
- ③ 선거분과위원회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후보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제2항 제1호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선거운동 허용 범위) 선거운동 중 개인별 홍보물 인정 범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후보자의 명함
 - 가. 제작 사양: 가로9cm×세로5cm 이내(날장, 양면 가능)
 - 나. 명함 내용: 자유
 - 다. 명함 배포방법: 후보자의 운동원 1인(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만 배포 가능
 - 라. 주의 사항: 명함의 내용 중에 명백한 허위사실, 타 후보 비방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배포를 금지함.
2. 선거운동 목적의 전자우편(e-mail) 발송 시 명시해야 할 사항
 - 가. 메일 발송 제목에 '○○○ 대구교총 회장 후보 선거운동 정보' 내용 주지
 - 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수신거부를 표시한 경우 차후 이메일 발송 시 이메일이 수신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다. 타 후보 비방, 공약 비교 등 타 후보를 흠집 내고자 하는 일체의 내용은 금지되며, 위반 시 선거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재를 가함.

3. 문자메시지 발송 시 명시해야 할 사항

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수신거부를 표시한 경우 차후 문자메시지 수신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나. 타 후보 비방, 비교 등 타 후보를 흠집 내고자 하는 일체의 내용은 금지되며, 위반 시 선거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재를 가함.

4. A4 홍보물(전 회원 선거 홍보물) 대구교총 및 한국교총 회원의 직위·성명을 이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거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를 가함.

제25조(후보 연락처) 후보자는 위원회에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연락처가 변경될 시에는 즉시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후보자 공보 등) 후보자 공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7. 선거운동 위반사례 접수처: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대구교총 053)655-2680)

8. 기타사항

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인에게 추후 별도 안내함.

나.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와 관련한 공고는 추후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에 공고할 예정임.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대구교총 053)655-2680)문의 바람.

2019. 9. 24.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

